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도입과 주요 내용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내의 노력은 1992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방범설계를 위한 지침’을 전국 설계사무소에 배포한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2005년 경찰청이 범죄예방 원리에 따른 건축 및 공간유형별·시설물별 기준 적용에 관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법무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에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때는 경찰청이 국토교통부에 ‘범죄예방’을 고려한 법률 개정을 요구한 2010년부터로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은 신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건물 및 시설물을 배치하는 등 안전한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수립되었다. 이 기준에서는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를 중심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배치와 공공장소·가로조경·조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재정비촉진 계획 수립 시 사업 시행기간 중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제9조 제1항 제13호의 2)하고 있으며,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령 현황

관계 법령	개정연월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년 1월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기준 신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1년 5월	재정비촉진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 범죄예방대책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비구역 내 가로등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수립
「국토기본법 시행령」	2012년 5월	도종합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년 12월	도시공원 조성 계획 수립단계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고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013년 9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 포함
「건축법」	2014년 5월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의무 준수
「건축법 시행령」	2014년 11월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의 적용대상 구체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015년 4월	일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 설계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

자료: 조영진·조상규·김승남,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16 참고 제작

주민 안전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30조의 3)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28조의 2)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비구역 내 가로등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제30조 제4호의 2)하였다.

「국토기본법 시행령」은 범죄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제5조 제2항 제3호의 2)하여 국토계획과 범죄예방의 연계를 추진하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단계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제8조 제3호 다목)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계획·조성·관리 시 범죄예방의 일반원칙을 적용(제10조 제2항)하였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배치와 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개발계획의 내용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제9조 제3호)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다.

특히 2014년에 개정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은 국내 건축물 건축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나라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가 세계적 수준에 올라서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정된 「건축법」이 밝히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후 별도로 소개하여 이해를 돋고자 한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조례 및 지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 추진과 동시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통적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 기본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환경 디자인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등의 협조, 대상사업 등의 협의, 시행규칙 등을 포함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는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을 명시(제4조 제4호)하였다.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는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환경디자인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범죄예방 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도, 시·군, 공공기관이 지원 또는 시행하는 건축이나 공간 조성, 도심재개발 및 각종 환경개선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추진사업, 협력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의 조항에 세부내용을 명시하였다. 이후 부산시 동래구·북구·해운대구·사하구·수영구·사상구에서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근거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조례 및 지침 현황

소관 부처	수립 연도	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제2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2008	화성 동탄신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장 제13·15·18·20조, 3장 제3조	단지 내 생활도로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방범설계방안 제시
	2008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2조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을 바탕으로 하는 건축물·조경·조명 등에 대한 범죄예방계획 제시
	2008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	
부천시	지침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지침	공동주택 및 상업·업무시설별 범죄예방 설계지침 제시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	재정비촉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명시
	지침	서울특별시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CCTV 설치 및 개인화상정보 취급에 대한 준수사항 제시
	2008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공공건축물의 개방적인 저층부 디자인 제시
	2008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주차장, 공원계획 시 시각적 차폐 지양
	2008	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시설물 주변 야간조명 설치 권장
경기도	2009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지침	범죄유형을 여덟 가지, 유해환경 요소를 일곱 가지로 정립하고 4대 기본원칙과 9개 실행전략 제시
	조례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공간과 건축물에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
부산시	조례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울산시	조례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양산시	지침	양산시 범죄예방 관련 환경설계(CPTED)지침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시설, 기타 시설물에 대한 CPTED 지침 제시
광주시	조례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세종시	조례	세종특별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환경설계 요소를 건축설계 시 적용하도록 명시
대전시	조례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대구시	조례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
강원도	조례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우선 적용 범위 및 활성화 사업 유형 명시

자료: 조영진·조상규·김승남,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p.16 참고 제작성

서울시·경기도·부산시·울산시 등을 비롯한 지자체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고 그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물리적인 환경디자인의 구축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범죄예방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부족하였다.

「건축법」 개정을 통한 건축물의 범죄예방 의무화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5월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제53조의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장관이 고시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를 건축물 설계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매우 실효적이고 강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건축법」 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2014년 11월에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61조의 3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신설함으로써 「건축법」 제53조의 2에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접회사설(동·식물원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본조신설 2014.11.28.]

이후 2015년 4월 1일에는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였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2장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상관 없이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범죄예방 공통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범죄예방 기준을 제시하여 건축물 용도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차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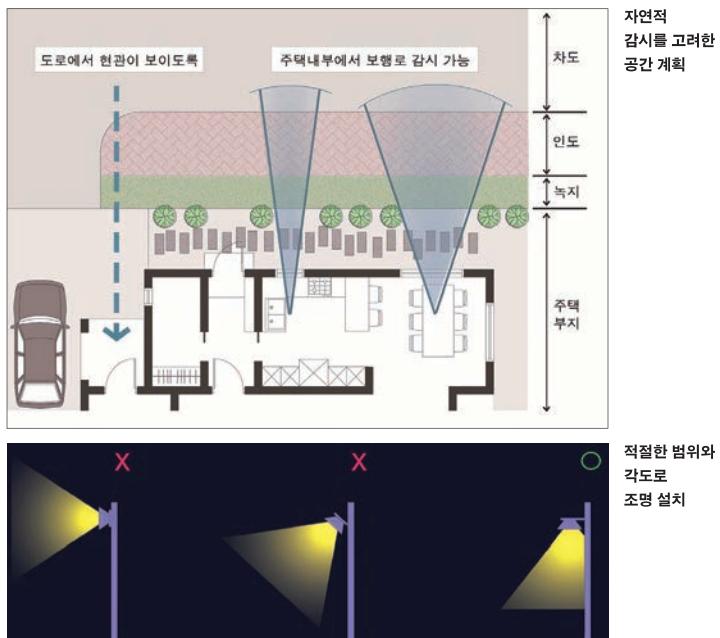
범죄예방 건축기준 공통기준

항목	세부기준
접근 통제	보행로 자연감시 계획, 건축물 외벽에 범죄자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설치 제한
영역성 확보	공적·사적 공간 위계의 명확한 구분
활동의 활성화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외부 시설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설로 상호 연계 설치
조경	사각·고립지대 없도록 식재, 건물과 일정거리 이격
조명	출입구, 건축물 진입로와 표지판에 충분한 조명 설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 식별이 쉽도록 조명 설치, 범위와 각도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 방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안내판	주·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2015.4.1.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공통기준 활용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앞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2015.4.1, p.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 권장기준

항목	세부기준
출입문·창문	침입 방어 성능 제품 사용
주출입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계획
옥외배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
조명 등	건축물 축면, 뒷면,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정한 조명과 반사경 설치
기타	전기·수도 등 검침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

자료: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2015.4.1.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 권장기준 활용예시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앞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2015.4.1, p.5.



국내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를 살펴본 결과 2010년을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도입된 것을 확인하였고, 중앙부처에서는 기존의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주로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관련한 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즘 들어 급증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을 제외하고 대다수 법령이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항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법령 개정 시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원리와 실천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실제적으로 구현 가능한 조항이 추가·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환경조성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및 범죄위험평가도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도시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범죄예방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나, 범죄예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범죄위험평가 및 범죄위험평가도구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사업대상지의 계획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범죄예방 관련 실무자가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위험평가 및 범죄위험평가도구 관련 규정의 추가보완이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의 유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예로 현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 범죄는 공동주택보다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택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공간환경 또한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범죄예방 환경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유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법제도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조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실제 공간환경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해외에서는 범죄예방 우수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노력한 건축

주와 토지주 등에게 일정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지침 등이 빠르게 신설·개정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관련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와 사업이 국민의 범죄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련 제도와 사업에 대한 기획·수행·모니터링 등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앞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2015.4.1.
- 2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2015.4.1.
- 3 유광호·조영진, 「범죄예방 환경설계 매뉴얼 개발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 4 조영진·조상규·김승남,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범죄위험평가 도입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5.